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주보훈요양원 휴직대체 계약직[간호사] 채용공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주보훈요양원」에서 혼신·봉사의 자세로 공단 발전을 위해 함께 근무할 직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주보훈요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실시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채용인원	응시자격
간호사 (사회복지직 5급)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채용예정직과 관련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경력증명서 상 직무가 간호사로 표기되어야 인정)• 3교대 근무 가능한 자<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D - 06:30~15:30(휴게시간 12:00~13:00)② E - 13:00~22:00(휴게시간 15:30~16:30)③ N - 22:00~07:00(휴게시간 01:00~02:00)• 주간근무시 : 08:30~17:30(휴게시간 12:00~13:00)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직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 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자 채용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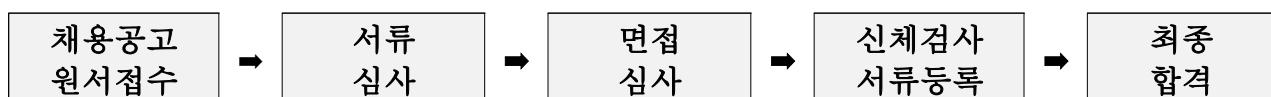
2 채용분야별 운영형태

채용분야	고용형태	운영형태	
사회복지직	간호사	정규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기간 : 2024. 1. 24.(수) ~ 2024. 7. 13.(토) ※ 계약종료 후 정규직 비전환 임용형태 : 수습기간(3개월) 운영 후 평가결과에 따라 수습해제 (근무성적 미흡 시 임용해제) 보수수준 : 공단 규정 · 지침 준용 근무장소 : 원주보훈요양원 (강원 원주시 혁신로 249)

※ 원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해당자에 한해 추가 지급(급여외 별도)
(지급기관: 원주시청/ 지급액: 월 10~18만원)

3 채용절차 및 일정

가. 전형절차



구분	1차(서류)	2차(면접)
공통	• 필수서류 제출 시 합격	• 블라인드 면접 (직무 · 능력 · 인성면접)
전형별 합격결정	• 불성실 기재 시 불합격 할 수 있음 (동일글자 반복, 복사 · 붙여넣기 등)	• 면접점수 60점 미만 과락 • 면접(100)+가점(10) 합산 고득점 순

나.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발 표	비 고
서류접수	12.27(수)~1.10(수)	1.11(목)	채용지원사이트
면접시험	1.16(화)	1.18(목)	원주보훈요양원
채용검증위원회	1.17(수)		서면 개최
합격서류 등록	1.19(금)~1.23(화)		방문, 우편 접수
임 용	1.24(수)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3. 12. 27(수)~'24. 1. 10(수)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채용지원사이트(<http://recruit.incruit.com/bohun>)에서 작성 ※ 방문·우편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24. 1. 10.) 17:00까지 제출한 서류에 한해 접수
- 블라인드 채용 진행으로, 지원서 및 증명서 제출 시 사진·학력·성별·출신지 등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체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바랍니다. 추후 응시자격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응시자격·우대가점 등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필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채용지원사이트 온라인 양식 작성)② 채용직무 관련 자격증 스캔본 1부③ 채용예정직과 관련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증명서 상 직무가 간호사로 표기되어야 인정) 경력증명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자격증, 경력증명 등은 접수마감일 기준• 가점 해당자는 서류접수 시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가점 부여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④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⑤ 사회형평가점자 증명서 1부(해당자)⑥ 기타 보유한 자격증명서류	

5

우대사항

구 분	우 대 자 격 요 전	우 대 가 점	
법정 가점	취업지원 대 상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7조의9제2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취업지원대상자	각 시험별 만점의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7조의9제2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취업지원대상자	각 시험별 만점의 5%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각 시험별 만점의 10%
	기초생활수 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필기시험 만점의 5%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필기시험 만점의 5%
	북한이탈주 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필기시험 만점의 5%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필기시험 만점의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은 채용분야별 응시자 수가 선별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 한함

6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최종합격자 제외) 합격자 발표 후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우리 요양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
이나 그 밖에 공단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원주보훈요양원 팩스(033-769-2081)
또는 인사담당자 이메일(lsg3199@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수신자 요금부담)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요양원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과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입사 후 발견 시 합격취소)
- 응시자가 저조하거나 적합한 인재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이 발생 시 차순위자와 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요양원은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호, 제2호에 따라 부당한 채용 청탁이나 압력·강요를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른 처벌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안내는 우리 공단 및 요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아 각 전형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당 전형에 불합격 처리됩니다.
- 합격자는 임용일 즉시 근무 가능해야 하며 별도의 기숙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원주보훈요양원(033-769-2052)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3. 12. 27.

원주보훈요양원장